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5
----------	-----

발의연월일 : 2024. 6. 20

발의자 : 정일영 · 신영대 · 정태호

박희승 · 황명선 · 강준현

백승아 · 박수현 · 김태년

안도걸 · 정성호 · 박홍근

손명수 · 김영환 · 최기상

박해철 · 박홍배 · 노종면

민형배 · 정준호 · 윤호중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또는”으로,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를 “학원에”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를 “학원에”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다. (생 략)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 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어린이집 또는-----

원에 _____ 학

-----학원에-----

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 학생을 위하여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 3. (생 략)

④ ~ ⑪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